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 신 전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법·제도 담당
제 목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 관련 질의 결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에서는 COD가 TOC(총유기탄소량)로 개정('21.1.1)되어 측정방법이 상이한 문제에 대하여 협회가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 COD 및 TOC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하·폐수처리 시설에서 COD를 대신하여 TOC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의 가)에 따른 COD 배출허용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이 가능
 -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하·폐수처리 시설에 유입하려는 시설의 이송수에 적용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 필요

붙 임 : 환경부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협회장



대 리 김 정 훈 기술지원팀장 한 인 성 상 무 장 기 석 부회장 김 상 배 회 장 김 영 석
협조자
시 행 한매협 2021 - 11호 (2021. 3. 19)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iwl.or.kr
전 화 02-718-7900 전 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환경부



수신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
(경유)

제목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알림

1. 한매협2021-5(2021.1.29.)호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방법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개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서는 침출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하수처리 시설 연계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21.1.1일자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아닌 총유기탄소량(TOC)로 변경되었음
- (질의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유기탄소량을 수질기준으로 적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침출수를 위탁하는 매립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상의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준수해서 위탁 처리해야 하는지?
- (질의 2)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침출수를 위탁하는 매립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하는지?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 (협회의 의견) 총유기탄소량은 수중에 용존하는 유기탄소의 총량을 의미하며,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유기물질량을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로 표현법이 달라졌을 뿐 유기 물질의 함량을 나타내는 기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침출수를 위탁하는 매립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준수 하여 위탁처리 할 필요가 없으며, 총유기탄소량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도 없고 총유기탄소량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 검토의견

- (질의1,2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나목2)의 마)에 따라 매립시설 인근에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침출수에서 발생

하는 오염물질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할 수 있음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개정에 따라 '21.1.1일부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총유기탄소량(TOC)은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측정·분석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하·폐수처리 시설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대신하여 총유기탄소량(TOC)을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침출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의 가)에 따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려는 시설의 이송수에 적용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끝.

환 경 부 장 관



주무관 박성수 환경사무관 정지민 과장 전결 2021. 3. 11. 문제원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1242 (2021. 3. 11.)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69 팩스번호 044-201-7376 / pss1112@me.go.kr / 비공개(5)